

「건설산업기본법」 위반 종합건설사업자 과태료 부과처분 공고

「건설산업기본법」을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하고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. 7. 22.

경 상 북 도 지 사

1. 처분 내용

업체명 (대표자)	소재지	처분사유	처분내용	처분근거
주식회사 디아이티 (김동락)	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대구대길 162-32	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 제2항 위반 (건설업 등록증·등록수첩의 기재사항 변경신청 지연)	과태료 (금225,000원)	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100조 제1호

2.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도시계획과(054-880-3916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